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의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관한

화장품위원회 공고(제7호)

불기 2567년(서기 2024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22조 세번째 단락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화장품위원회는 2024년 6월 25일 개최된 제3/2024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본 공고는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기 2561년(서기 2018년) 4월 3일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의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관한 화장품위원회 공고(불기 2561년) 부록에 항목 212a 및 212b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번호	사용된 물질의 명칭			사용 및/또는 적용 분야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
	화학명/ 다른 명칭	일반 성분 용어 명칭	CAS 번호		
"212a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μm 이하인 입자를 1%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티타늄디옥사이드 (Titanium dioxide in powder form containing 1% or more of particles with aerodynamic diameter $\leq 10 \mu\text{m}$)	Titanium dioxide	13463-67-7/ 1317-70-0/	분말/가루 형태의 안면 피부용 제품	-
			1317-80-2	일반 소비자용 모발용 제품으로 압축 가스 스프레이형	-
				미용사용 모발용 제품으로 압축 가스 스프레이형	-
				기타 제품	-
212b	티타늄디옥사이드 212a (Titanium dioxide 212a)	Titanium dioxide	13463-67-7/ 1317-70-0/ 1317-80-2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자외선 차단 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경고 문구 표시에 관한 화장품위원회 공고에 따른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2024년 10월 15일 공고

몬티엔 카나사와스드

보건부 차관보

보건 서비스 지원분야 총괄책임자

화장품위원회 위원장